

# AML 제도 이행평가 개편에 대한 설명회

---

# 목 차

---

1. AML 제도이행평가 개요
2. 위험관리평가 상세
3. 종합평가 상세
4. 기타 평가사항 안내
5.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

# 1. AML 제도이행평가 개요

---

1.1 위험관리평가 개요

1.2 AML 제도이행평가 평가지표 구분

1.3 AML 제도이행평가 평가 구분

1.4 AML 제도이행평가 평가방법

## 1.1 AML 제도이행평가 개요

### 평가목적

-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
- [금융회사등]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되거나 관리가 미진한 취약부분을 찾아내어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
- [FIU] 고위험 회사와 업권, 취약분야를 찾아내어 검사·감독 및 교육에 활용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 포상 실시

### 평가변경 취지

- 금융회사등 평가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
- 신규업권에 대한 지표개발과 최근 이슈사항 및 요청사항 반영

## 1.2 AML 제도이행평가 평가지표 구분

### 고유위험지표 (위험노출도 측정지표)

- 금융거래 사업의 ML(자금세탁)/TF(테러자금) 위험 노출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
- 금융거래규모 및 상품 등에 따른 ML/TF 내재위험을 측정
- 총 200개 지표로 구성, 업권별 영업내용에 따라 지표를 선정하여 사용
  - ☞ 위험노출을 측정하는 지표로,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변경

### 운영위험지표 (위험관리도 측정지표)

- ML/TF 위험 통제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
- AML/CFT 관련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관리의무사항을 포함
- 총 101개 지표로 구성, 쏠 지표에 대해 쏠 업권 필수지정
  - ☞ 위험관리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, AML 관리가 잘 될수록 점수가 높음

## 1.3 AML 제도이행평가 평가구분

### 위험관리평가

-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(위험관리수준 평가)
- 분기별 평가로, 업권별 영업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기반접근법(RBA)에 따른 평가
- 고유위험(위험노출도)과 운영위험(위험관리도)으로 구분하여 평가
  - ☞ **검사·감독**을 위해 위험보유 및 위험관리 수준을 **업권 내 비교**

### 종합평가

-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(종합평가)
- **연1회 평가**로, 전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
- 규정 이행여부 및 FIU분석율 등으로 운영위험 중 중요지표를 선정하여 평가에 사용
  - ☞ **포상 등 소 업권 비교**

## 1.4 AML 제도이행평가 평가방법

### 평가대상

- AML 의무부여대상 (약5천여개 금융회사등)

### 평가기간

- 최근 1년 기준('21년 3분기 ~ '22년 2분기)

\* 일부지표는 최근 1분기 값을 사용하므로, 지표상세설명 참조 필요

### 평가방법

- RBA시스템(<https://rba.kofiu.go.kr>) 각 지표의 금융회사 입력값을 기준으로 평가
- 일부 지표의 경우 FIU 값을 기준으로 평가 (FIU 분석율 등)
- 종합평가는 위험관리평가 입력 값을 통하여 평가
  - 동일 지표에 대해 위험관리평가와 종합평가의 배점 및 평가점수는 상이

## 2. 위험관리평가 상세

---

- 2.1 위험관리평가 업권별 필수지정 기준
- 2.2 위험관리평가 업권별 필수지정 현황
- 2.3 위험관리평가 ‘등급제’ 안내 (금융회사 대상)
- 2.4 위험관리평가 ‘등급제’ 안내 (검사수탁기관 대상)

## 2.1 위험관리평가 업권별 필수지정 기준

각 업권별 필수지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

### 〈운영위험지표〉

- 운영위험은 업무규정에 대한 이행여부 및 **소 업권 공통사항으로 전체 필수지표 처리**
- 필수지표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**‘필수제외 업권’ 지정**
  - \* 영업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“해당없음”을 입력하여 기본점수를 부여받음

### 〈고유위험지표〉

- **권고지표를 기준으로 필수지표 선정**
- 입력한 금융회사가 많거나 적은 경우 필수지표 선정 및 제외
- 필수지표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**평가방법을 조정**
  - \* **자금세탁위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고유위험 점수가 높아짐**

## 2.2 위험관리평가 업권별 필수지정 현황

| 업권구분  | 고유위험<br>필수지표수<br>(위험노출) | 운영위험<br>필수지표수<br>(위험관리) | 업권구분    | 고유위험<br>필수지표수<br>(위험노출) | 운영위험<br>필수지표수<br>(위험관리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은행    | 57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선물사     | 42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국내증권  | 49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자산운용    | 45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생보    | 58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부동산신탁   | 28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손보    | 54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투자일임    | 38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농협    | 30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해외송금업자  | 39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수협    | 30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리스      | 38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카드    | 54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할부금융    | 35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저축은행  | 54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중앙회     | 33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신협    | 30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우정국     | 100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새마을금고 | 28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금융지주    | 4 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외은지점  | 55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창투  | 2 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외국계증권 | 46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가상자산사업자 | 41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신기술   | 35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전자금융업자  | 32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산림조합  | 38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온투업자    | 26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| 카지노   | 43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 대부업자    | 28                      | 101                     |

\* 고유위험측정이 누락되지 않도록, 회사별 영업내용에 따라 필수 외 지표도 선택하여 입력

## 2.3 위험관리평가 ‘등급제’ 안내 (금융회사 대상)

고유위험과 운영위험을 각각 5단계로 등급화 하여 위험별 등급을 안내

- 동 업권 내 금융회사의 **평가순위를 기준으로 등급화**
  - 고유위험과 운영위험지표의 최종점수를 순위로 계산하여 등급화 처리
  - 개별지표의 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
  - 동 업권 내 금융회사가 10개 미만인 경우 순위안내 유지 (선물사, 중앙회, 카드, 우정국)

| 구분기준 | 상위15%이내<br>(15%) | 16% ~ 35%<br>(20%) | 36% ~ 65%<br>(30%) | 66% ~ 85%<br>(20%) | 86%~100%<br>(15%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고유위험 | 높음(A)            | 다소높음(B)            | 보통(C)              | 다소낮음(D)            | 낮음(E)             |
| 운영위험 | 우수(Ⅰ)            | 양호(Ⅱ)              | 보통(Ⅲ)              | 미흡(Ⅳ)              | 주의(Ⅴ)             |

## 2.4 위험관리평가 ‘등급제’ 안내 (검사수탁기관 대상)

고유위험과 운영위험의 각 등급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3단계로 등급화 하여 구분

- 검사수탁기관의 활용여부는 자체결정에 따름

| 구 분   |         | 위험관리도(운영위험)<br>하(관리 미흡) <--> 상(관리 철저)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|
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  |         | 주의(V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흡(IV) | 보통(III) | 양호(II) | 우수(I) |
| 위험관리도<br>(내재위험)<br>상 << (내재위험多)<br><<< (내재위험少)<br>>>> 하 | 높음(A)   | 집중감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집중감시   | 일상감시    | 일상감시   | 자율감시  |
|   | 다소높음(B) | 집중감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집중감시   | 일상감시    | 일상감시   | 자율감시  |
|   | 보통(C)   | 집중감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상감시   | 일상감시    | 일상감시   | 자율감시  |
|   | 다소낮음(D) | 집중감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상감시   | 일상감시    | 자율감시   | 자율감시  |
|   | 낮음(E)   | 집중감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상감시   | 일상감시    | 자율감시   | 자율감시  |

# 3. 종합평가 상세

---

3.1 종합평가 평가지표

3.2 종합평가 세부사항

## 3.1 종합평가 평가지표

### 평가지표

- “운영위험지표” 중 75개 지표를 선정하여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

\* 각 금융회사의 위험평가지표('22년 3분기) 입력 값을 활용

| 분야(총 지표수)         | 선정지표수      | 배점         | 비율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전사통제정책(11개)       | 11개        | 100        | 12.5%       |
| 내부통제(17개)         | 13개        | 200        | 25%         |
| 고객확인(36개)         | 27개        | 200        | 25%         |
| 위험관리(18개)         | 12개        | 100        | 12.5%       |
| 모니터링 및 보고관리(19개)  | 12개        | 200        | 25%         |
| <b>합계 (총101개)</b> | <b>75개</b> | <b>800</b> | <b>100%</b> |

## 3.2 종합평가 세부사항

### 평가방법

- 동일한 기준에서 모든 대상을 평가

\* 상대평가 지표의 경우 “**쏠 업권 상대평가**”로 평가 (입력값/금융회사 중 최대 입력값)

### 현장점검 실시

- 금융회사 입력에 의한 평가로, 평가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

\* 또한 상대평가지표의 평가는 타 금융회사의 입력값(최대입력값)을 기준으로 평가

- 상대평가방식 : [위험평가] 입력값 / 同 업권 최대 입력값, [종합평가] 입력값 / 쏠 업권 최대 입력값

- 증빙자료 미제출 등 입력근거 부적합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

- 입력자료 중 이상값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 후 현장점검 대상 확정 예정

☞ 지속적인 **현장점검 확대**를 통해 평가의 신뢰성 확보

## 4. 기타 평가사항 안내

---

4.1 운영위험 지표조정 안내

4.2 고유위험 지표조정 안내

4.3 기본점수부여 관련

4.4 기타

4.5 추진일정 안내

## 4.1 운영위험 지표조정 안내

### 운영위험 조정

- 총 30개 지표가 수정

\* 지표정의서('22년 개정안) 변경목록 참조

### 주요변경사항 안내

- STR 신속성 삭제(O.5.01.07)
- AML/CFT 정보보안 점검실적 추가(O.2.05.04)
- 해외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공식 제재 · 조치 포함(O.1.01.01 등)
- 동일인에 대해 최대1건만 인정(O.2.01.03 등)
- 교육실적 인정(단순 사이버교육은 70%만 인정)
- 상세분석율 배점 조정(O.5.03.04)
- STR 충실도 대상 확대(O.5.04.02)

## 4.2 고유위험 지표조정 안내

### 고유위험 조정

- 총 49개 지표가 추가 및 수정  
\* 지표정의서('22년 개정안) 변경목록 참조

### 주요변경사항 안내

- 가상자산업 대상 신규지표 추가 및 기존지표 수정
- 대부업 대상 신규지표 추가 및 기존지표 수정
- 전자금융업 대상 신규지표 추가 및 기존지표 수정
- P2P업 대상 신규지표 추가 및 기존지표 수정

## 4.3 기본점수부여 관련 (평가계획 '참고2' )

### 기본점수 부여원칙

- 영업 특성에 따라 “해당없음”을 입력할 수 있도록 지표별 필수제외 업권 지정
  - “해당없음”을 선택한 경우만 기본점수가 부여되며, 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입력 가능
- 금융회사의 필수제외 요청을 대상으로 제외여부 검토 (기존 입력값 및 업권 특성 등 참고)
- 고유위험은 제외검토 대상에서 제외 (‘위험요인 없음(0)’을 입력하여 정당한 평가 가능)
- 기본점수는 “평균점수”를 부여하여 평가에 반영
  - 위험관리평가는 업권 내 평균점수 부여, 종합평가는 전 업권 평균점수 부여

### 필수제외 추가요청 방법

- 협회 및 중앙회 등을 통해 필수제외 요청을 FIU에 전달(지표번호, 작성자 연락처 필수)
  - 협회 및 중앙회는 필수지표 제외로 인해 AML관리가 취약하지 않도록 선 검토 후 FIU에 요청

\* 다만, 금번 평가에 바로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

## 4.4 기타

---

### 평가자료 문서화

- 위험기반접근법 처리기준에 따라 위험평가 결과는 근거 입증, 평가 업데이트를 위해 반드시 문서화하여 관리
  -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현장점검 등 조치 예정

## 4.5 추진일정

| 세부 일정   | 시기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추가·변경된 지표에 대한 RBA시스템 반영</li> </ul>   | ~ '22.7월 말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금융회사 평가기초자료 입력기간 운영</li> </ul>       | ~ '22.9월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회사 위험평가 '22.3분기 평가자료 입력</li> </ul> | ~ '22.09.21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FIU 분석율 등 통계자료 입력</li> </ul>         | ~ '22.09.21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회사 평가자료에 대한 1차 집계</li> </ul>       | ~ '22.09.23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회사 평가결과 이의제기 및 수정기간 운영</li> </ul>  | '22.9.26 ~ 30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평가자료 검토 및 결과 확정</li> </ul>           | '22.10월 초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평가결과 검사수탁기관 공유</li> </ul>            | '22.10월 중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평가 증빙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 착수</li> </ul>      | '22.11월 이후    |

# 5. QnA

---

자주하는 질문 안내

## 5. 자주하는 질문 (1)

### Q1. 지표설명 중 “금감원 업무보고서 준용”에 대한 질문

- ☞ 금감원 업무보고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,  
업무보고서와 동일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아님 (기간, 내용 등 다를 수 있음)

### Q2. 고유위험지표 점수산정 방법 변경

- ☞ 고유위험은 ML/TF 위험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가 산정되며,  
고유위험지표 점수가 높을 수록 위험에 많이 노출되었음을 의미  
(예) 고액자산가 고객 규모(I.1.04.01)에서 “0”명을 입력하면 해당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평가

### Q3. 관리되지 않는 지표에 대해 모두 “0”을 입력하면 되는지 문의

- ☞ 운영위험지표와 고유위험지표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.
  - 운영위험지표는 AML/CFT 관리에 관한 것으로, “0”점은 부정적 평가에 해당
  - 고유위험지표는 ML/TF 위험노출에 관한것으로, “0”점은 긍정적 평가에 해당

## 5. 자주하는 질문 (2)

### Q4. 이사진과 경영진의 구분에 대한 질문

- ☞ 업무규정 제4조와 제5조에서 이사진과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을 정의하고 있음.  
동일인이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면 중복적용 가능 (업무분장 등 판단근거 필요)

### Q5. 사이버교육의 100% 인정 요청

- ☞ 직접교육과 사이버교육은 구별하여 인정. (과거 사이버교육은 50%만 인정)  
다만,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인정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 
사이버교육(쌍방향 및 단순시청)에 대한 인정기준은 추후 변경 예정

### Q6. 정보보안 점검실적 지표(O.2.05.04)에서 외부전문기관의 점검 1회에 관한 문의

- ☞ 외부 전문기관으로 부터 AML시스템 전체에 대해 정보보안 점검을 받은 경우 최고 인정  
\* 외부 보안전문기관은 「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3」을 참고하며,  
내부판단에 의한 정보보안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점검 가능 (판단근거 증빙필요)

## 5. 자주하는 질문 (3)

### Q7. FIU평가 지표에 관한 문의 관련

- ☞ FIU분석율 점수 등 FIU평가 지표는 심사분석실의 기초분석 및 상세분석을 통해 채점되며, 선정기준에 대한 공개는 어려움.

### Q8. 증빙자료 요구에 대한 문의 관련

- ☞ 이상값 측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정이며, 측정기준 공개는 불투명  
다만, 동 업권내 타 금융사와의 입력 값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등을 예상할 수 있음

### Q9. 검사수탁기관용 3등급(집중감시, 일상감시, 자율감시)에 대한 문의

- ☞ 운영위험과 고유위험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검사수탁기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이며, 해당 등급에 대한 활용방안은 각 검사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

## 5. 자주하는 질문 (4)

### Q10. 필수제외 요청에 관한 문의

☞ 업권의 특성상 절대로 관리할 수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 필수제외지표를 지정하며 개별회사의 관리 부재를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움.

\* 필수제외는 업권별로 가능하며, 일부회사의 필수제외 요청에 따라 제외처리 처리불가 또한 필수제외 요청은 가급적 협회나 중앙회 등을 통해 1차 검토 후 요청 부탁

### Q11. 지표(AML/CFT 위험/취약점 식별활동 실적, O.4.01.05) 에 대한 문의

☞ 점검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점검한 실적만 해당하는 것으로, 각 점검마다 증빙문서(계획서, 시행문, 결과 보고서 등)가 존재해야 인정 가능

## 5. 자주하는 질문 (가상자산업)

- 코인취급지표 중 계수대상 확인 관련

- ☞ 해당기간 중 취급한 코인에 대한 지표이므로, 평가기간에 내용이 해당한다면 계수함  
(예) 취급 가상자산의 개수(I.3.39.01)에서 평가기간 중 상장 후 상폐된 가상자산도  
평가기간 중 취급하였으므로 포함하여 계산